

# 연구사업수행규칙 일부개정[안]

## 1. 의결주문

연구사업수행규칙 일부개정[안]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.

## 2. 제안사유

- 자체연구사업과 수시·협력·공동연구사업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재정립하여 연구사업 유형 분류를 체계화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자체연구 범위에 ‘수시연구’ 사업을 포함
- 협력연구사업의 ‘협정에 의한 연구사업’ 유형 신설
- ‘공동연구사업’ 조항 삭제

※ 연구사업 유형 분류

현 행	개 정 안
1. 정책·기초·현안 연구사업 2. 수탁연구사업 3. 협약연구사업 4. 수시연구사업 5. 협력연구사업 6. 공동연구사업	1. 자체연구사업(정책·기초·현안·수시연구) 2. 수탁연구사업 3. 협약연구사업 4. 협력연구사업

## 4. 시 행 일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① <u>정책·기초·현안연구사업 (이하 “정책·기초·현안연구”라 한다)이라 함은 연구원이 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신 설 &gt;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수시연구사업 (이하 “수시연구”라 한다)이라 함은 신속한 현안 문제해결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, 타당성 검증, 민간투자사업 협약 검토 등 수시 검토 과제를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<u>정책·기초·현안·수시연구사업 (이하 “자체연구”라 한다)이라 함은 연구원이 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수시연구 : 신속한 현안 문제 해결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, 타당성 검증, 민간투자사업 협약 검토 등 수시 검토 연구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&lt; 삭 제 &gt;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⑤“협력연구사업”(이하 “협력연구”라 한다)이라 함은 연구원이 외부의 학계, 단체, 전문가 <u>등의 제안을 받아 외부와 협력하여</u> 수행하는 연구사업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정책기획, 작은연구 과제</u> : 전체가 위탁되어 보고서가 납품되는 연구사업</li> <li>2. <u>작은연구 모임 등 기타 연구사업</u> : <u>연구보고서와 다른 형태로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기타의 연구사업</u>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신 설 &gt;</p> <p>⑥ (생략)</p> <p>⑦ <u>공동연구사업 (이하 “공동연구”라 한다)이라 함은 연구원이 외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.</u></p> <p>⑧ (생략)</p>	<p>⑤“협력연구사업”(이하 “협력연구”라 한다)이라 함은 연구원이 외부의 학계, 단체, 전문가 <b>등과 협력하여</b> 수행하는 연구사업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b>정책기획 과제</b> : 전체가 위탁되어 보고서가 납품되는 연구사업</li> <li>2. <b>작은연구 지원사업 등 기타 연구사업</b></li> <li>3. <b>협정에 의한 연구사업</b> : 국내·외 학계, 단체, 기관 등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</li> </ol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&lt; 삭 제 &gt;</p> <p>⑧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연구사업의 분류) 연구사업은 <u>정책·기초·현안연구, 수탁연구, 협약연구, 수시연구, 협력연구</u> 로 구분한다.	제2조의2(연구사업의 분류) 연구사업은 <b>자체연구, 수탁연구, 협약연구, 협력연구</b> 로 구분한다.
제2장 <u>정책·기초·현안·수시·협력연구</u>	제2장 <b>자체·협력연구</b>
제9조의2(연구사업계획서) ① (생략)  ② <u>정책·기초·현안연구사업계획서</u> 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.~6. (생략)	제9조의2(연구사업계획서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<b>자체연구 및 협력연구사업계획서</b> 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.~6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연구자문회의) ① (생략)  ② 연구자문회의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	제10조(연구자문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연구자문회의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<b>다만, 수시연구와 협력연구는 연구자문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b>
제12조(보고서 발간) ① (생략)  ② <u>협력연구의 작은연구 모임 등 기타 연구사업은</u> 보고서 발간을 생략할 수 있다	제12조(보고서 발간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<b>협력연구의 작은연구 지원사업 등 기타 연구사업은</b> 보고서 발간을 생략할 수 있다
제25조(공동연구) <u>공동연구의 제반 절차는 본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</u>	제25조(공동연구) < 삭제 >